

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(안)

의안번호	제 227호
의결년월일	2005. 9. . (제 18 회)

제출일자	2005. 8. .
제출자	계 룡 시 장

1. 제정이유

○ 배 경

- 「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」(법률 6929호, 2003. 7. 18)이 제정 공포됨
- 이에 따라 2003. 9. 19 계룡시 개청됨
- 개청이후 계룡축제 및 기념행사 등의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

○ 필요성

- 계룡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 증진
- 시에서 이루어 지는 기념행사 및 계룡축제의 중복을 피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시민의 날에 통합운영 필요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- 시민의 날을 9월 19일로 지정함(안 제2조)
- 시민의 날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
3. 입법예고 결과

- 입법예고기간 : 2005. 6. 20 ~ 7. 9(20일간)
- 의견 제출 사항 : 없 음

4. 참고사항

- 다른 시·군 시민의 날 조례제정 현황
- 시민의 날 조례 제정 설문 조사 결과

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바탕으로 온 시민이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하여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위한 계룡시 시민의 날(이하 “시민의 날”이라 한다)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시민의 날) 매년 9월 19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.

제3조 (기념행사)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등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. 다만, 시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4조 (시행규칙)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타 시 · 군 시민의 날 조례 제정 현황

시 · 군별	시민의 날	조례 제정 목적	비고 (주관과)
천안시	10. 1	· 상호 공동체 의식 증진과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 발양	문화체육과
공주시	10. 1	·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고 전래의 민속문화 계승 발전	자치행정과
보령시	10. 1	· 시민의 화합과 단결 도모 및 향토문화 예술발양을 통한 애향심 고취	문화공보과
아산시	10. 1	· 상호 공동체 의식 증진, 시발전 지역문화 예술증진과 시민체육 향상에 기여	총무과
서산시	10. 1	· 시민 상호간 공동체 의식 증진과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 함양	문화관광과
논산시	10. 1	· 시민 상호 공동체 의식 증진 및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 함양	문화관광과
금산군	10. 1	"	문화공보과
연기군	10. 1	"	문화관광과
부여군	10. 1	"	문화관광과
서천군	10. 1	"	총무과
청양군	10. 1	"	기획감사실
홍성군	10. 1	"	문화공보실
예산군	10. 1	"	경영문화과
태안군	5. 1	"	문화관광과
당진군	10. 1	"	문화공보과

- 조사대상 : 전 시민
- 조사기간 : 2005. 5. 6 ~ 5. 16 (11일간)
- 조사방법
 - 설문지 배포 조사
 - 계룡시 홈페이지 게재

- 응답자 : 700명 (남자 353명, 여자 347명)
 - 설문지 조사 : 669명
 - 시 홈페이지게제 : 31명
- 설문지 조사

구 분 (응답자수)	응답자의견		비 고
	설 문 내 용	응답자수(%)	
필요성 (669)	절실히 필요하다	82 (12.3)	
	필요하다	367 (54.9)	
	그저그렇다	152 (22.7)	
	필요없다	45 (6.7)	
	전혀필요없다	23 (3.4)	
시민의날 (669)	7월 18일	70 (10.9)	※ 필요없다는 의견자중에서 일부 무응답
	9월 19일	386 (60.5)	
	10월 1일	84 (13.2)	
	11월 1일	40 (6.3)	
	10월 5일	49 (7.7)	
	기 타(무응답포함)	40 (1.4)	

○ 시 홈페이지 조사

구 분 (응답자수)	응답자의견		비 고
	설 문 내 용	응답자수(%)	
필요성 (31)	절실히 필요하다	7 (22.58)	
	필요하다	22 (70.96)	
	그저그렇다	1 (3.23)	
	필요없다	0 (0.00)	
	전혀필요없다	1 (3.23)	
시민의날 (31)	7월 18일	3 (9.67)	
	9월 19일	19 (61.29)	
	10월 1일	3 (9.67)	
	11월 1일	2 (6.45)	
	10월 5일	2 (6.45)	
	기 타	2 (6.45)	

○ 소수의견

- 시민의날에 체육대회 등 시민축제가 되었으면 함.
- 시민의 화합을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임.
- 주제를 정확히 하여 먹고 놀자판이 되지 않도록 함.
- 시민의 날을 0월 0째주 0요일로 함